

# 파주시 여성회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(안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509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1999. 10. 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개정부분 : 일부개정

☐ 개정이유

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 
현행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상에 규정된 위탁기관의 범위가 제한되  
어 있어 이를 개방하여 공익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여성회관의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범위를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이  
유사한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·관리 할 수 있도록한 규정을 삭제  
(안제9조)

##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중 “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법인에”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료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~제8조 (생략)                  | 제1조~제8조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9조(위탁관리)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      | 제9조(위탁관리) . . . . .                     |
| 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         | . . . . 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부 또는 전부를 <u>그 설치목적이 유사한</u>  | . . . . . ( <u>삭 제</u>                  |
| <u>비영리 공익법인에</u> 위탁관리 할 수 있다. | <u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</u> ) . . . . . |